



# District 356-C (Jeonbuk) Lions Clubs International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54984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회관2층) 전화 (063) 252-5214 FAX 252-2124  
홈페이지 [www.356-clions.or.kr](http://www.356-clions.or.kr) / e-mail : [jeonbukjg@hanmail.net](mailto:jeonbukjg@hanmail.net) 사무총장 민병주 재무총장 고용석

문서번호 : 2021-2022 제 17 호

시행일자 : 2021. 8. 2.

경유 :

수신 : 지역부총재, 클럽회장

참조 : 총무, 재무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 클럽회원 입회 지구 미등록 회원 등록 독려의 건

1. 삼복지절을 맞이하여 귀 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2022회기 년도를 맞아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귀하께 찬사를 보냅니다.
3.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1-2022회기 년도를 시작하여 단위클럽에서 7월중에 창립 주년행사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4. 아울러 당일 행사시에 클럽별로 많은 신입회원이 입회 선서를 하고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클럽에 회원으로 입회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지구본부에 회원으로 월별보고서에 기록하여 등록을 해 주셔야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6. 이에 간혹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잠자는 회원으로 있다가 불의에 사고를 당하여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못 받아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종종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7. 하오니 현재 단위클럽에서 지구본부에 등록하지 않는 미등록 회원이 있을 경우 곧 바로 등록처리 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례가 있을 경우 클럽 평점 반영에 불이익이 많이 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지구 조의금 지급 규정 1부.

끝.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지구

총 재 김 동



총재주제 :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동행!

# 356-C 地區 弔慰金 支給 規程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지구 소속 라이온과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이 생애를 통해 이룩한 훌륭한 라이온스 활동을 영원히 기념하고 추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금조성) 총재는 지구임원회의에서 정한 회비를 지구에 등록된 신입회원에게 부과하고 서면으로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위 기준) ① 회원과 배우자의 사망 시 조화 1점과 부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유족이 비석건립을 원할 시는 부의금 지급 범위 내에서 규정된 비석을 제작하여 준다.

② 지구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구임원의 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3단 조화 1점과 부의금을 지급하고 조위를 표한다.

③ 신입회원에게는 지구본부에 등록된 1년 후부터 본 규정이 적용된다.

④ 단위클럽에 입회하여 조위기금을 납부한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하였다더라도 지구발전에 크게 공헌 한 지구총재를 역임하였거나, 지구임원 역임자로 20년, 평회원으로 30년 이상 라이온 활동 경력이 있는 자는 본 규정 ①항을 소속클럽 회장이 사유발생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 적용한다.

⑤ 지구본부에 등록된 회원 사망시 라이온 활동경력에 따라 10년에서 20년 이하 100만원, 20년에서 30이하는 150만원, 30년이상은 200만원을 조의금(비석포함)으로 지급한다.

제4조(조위금 지급 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조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전(前)임기의 각종 의무 금 미납(전액)클럽의 회원 사망 시

② 전(前)임기 각종 의무 금 미납 회원 유고시

③ 퇴회당시 소속클럽에서 국제협회 기준의 정회원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회원의 사망 시.

제5조(조의금의 지급절차) ①지구 사무국장은 3조의 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구 사무총장과 지구 총재에게 이를 보고하고 조의금의 지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의금은 지구총재가 직접 조문 후 전달한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클럽회장 또는 클럽총무 앞으로 전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의금 지급은 총재의 명의로 행한다.

④ 별도 규정에 의한 지구장의 장례비 보조금은 본 규정의 기금에서 지급한다.

제6조(회비 불 반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관리) 본 기금은 특별회계로 지구본부에서 관리한다.

제8조(운영) 본 조위 사업은 지구본부에서 실행하며 총재가 총괄한다.

제9조(규정 적용)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조성된 조위기금은 본 규정이 발효한 날부터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전용금지) 본 조위금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조위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개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임원회 에서 과반수의 임원 출석과 출석임원 3 분의 2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1981년 11월 27일부터 발효한다.

본 규정은 1987년 8월 1일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부로 발효한다.

본 규정은 1988년 1월 6일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부로 발효한다.

본 규정은 1988년 9월 1일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부로 발효한다.

본 규정은 1993년 7월 23일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부로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04년 6월 4일 지구임원회의에서 일부를 개정하고 동 임원회의의 폐회 시부터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07년 9월 18일 일부를 개정하고 2007년 9월 20일 시행한다.

(개정) 본 규정은 2012년 2월 22일에 일부를 개정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본 규정은 2014년 1월 9일에 일부를 개정하고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개정 ) 본 규정은 2017년 2월 27일에 일부를 개정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